2017년 9월 1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여러분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회장 고바야시 가즈토시

(공인 생략)

타르 색소 (적색 501호, 오렌지색 204호 및 오렌지색 403호)의 사용 자숙에 대해

(자발적 기준)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한편,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서는 지금까지 타르 색소 중의 유기성 불순물 등에 주목한 색소 자체의 사용 자숙이나 시험법 설정 등 타르 색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대응을 실시해 왔습니다.

한편, 최근의 행정 동향으로서, 오르토톨루이딘에 대해, 2016년 11월 2일자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등의 제2류 물질에 추가되어, 2016년 11월 30일자로 특정화학물질 장애예방규칙 및 노동안전보건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발산억제 조치,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어디까지나 이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자의 노동안전 관점에서 강구되고 있는 조치로서, 오르토톨루이딘을 원료로 한 색소 혹은 이 색소를 배합한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건강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예방적 관점에서 타르 색소의 출발원료로서 오르토톨루이딘을 원료로 한 적색 501호 및 오렌지색 403호에 대해서 화장품 및 약용 화장품 등의 의약부외품에 대한 사용 자숙을 자발적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으로 특정화학물질 등의 제1류 물질에 규정되어 있는 디클로로벤지딘을 출발원료로 하는 오렌지색 204호에 대해서도 상기 2 색소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및 약용 화장품 등의 의약부외품에 대한 사용 자숙을 자발적 기준으로 합니다.

더불어, 황색 205호 및 적색 401호는 이번에 사용 자숙으로 한 3종의 염료와 동일하게 오르토톨루이딘 혹은 디클로로벤지딘을 출발원료로 하고 있지만, 이들 색소에서는 화학적 환원 분해에 의해서도 오르토톨루이딘 혹은 디클로로벤지딘을 검출하지 않거나, 색소를 정제함으로써 검출하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발적 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산하회원 여러분은 본 자발적 기준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